

#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89
----------	------

제출연월일 : 2025. 5. .

제출자 : 하남시장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보수공사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하남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3. 제정조례안: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6.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 기간: 2025. 4. 1. ~ 2025. 4. 21. [20일간]
-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개선내용 없음

## **9. 참고사항: 해당없음**

## **10. 관련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이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하자검사를 의뢰한 경우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 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리부서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부서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관리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

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1회 하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매년 하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회계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강 미 정
	팀장 직위·성명	계약팀장 최 윤 미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 진 경 (031-790-5244)

## 관계법령 발췌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 2024. 0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 검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5. 0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03. 12., 타법개정]

-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제70조(하자 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6.] [행정안전부령 제527호, 2024. 12. 6., 일부개정]

**제69조(하자 검사)** ①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